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어가 재해 복구비 지원비율(80% 이상) 명시〉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77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명구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2. 5.
3. 회 부 일 : 2026. 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하여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최대한을 보조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규모 또한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과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60퍼센트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재해복구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복구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피해금액의 80퍼센트 이상을 보조·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복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영어를 재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농어가 재해 복구비 지원비율(80% 이상) 명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복구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피해금액의 80퍼센트 이상을 보조·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022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다)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법률 제21022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10.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4. (생략) <u><신설></u>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제2항제3호 및 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보험목적물 여부, 농가와 어가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⑦ (생략)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복구비를 보조 및 지원하는 경우 피해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⑤ ~ ⑫ (현행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현행	개정안
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⑩ ~ ⑪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재해가 발생하여 같은 항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5년 7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5년 8월 14일 공포되어 2026년 8월 15일 시행예정인 법률 제21022호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보조 및 지원함에 있어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도 포함하고, 보조 및 지원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며, 보험목적물 여부나 재해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농산물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농수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으로 농어업 재해가 발생하면 농가 수입의 감소와

이로 인한 농업재생산 재원의 부족으로 농업생산을 저하시키고 식량
수급의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이에 정부는 농업재해대책 사업을 통해 농작물 복구 비용으로는 국
고와 지방비를 합쳐 농약대의 경우 100% 지원하고 있으나 대파대¹⁾와
시설복구비 등의 경우 용자를 포함하여 농어민의 부담분이 50% 이상
이 되고 있는 상황임.

[농업재해대책 사업 개요]

□ **관련규정**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제4조제7항 : 농어가 지원 기준과 방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준용

□ **지원 내용**

○ **(직접 지원)** 농업경영에 필요한 복구비를 지원

- 대파대(종묘.비료대), 농약대, 입식비(어린가축 구입비), 시설복구비 등

○ **(간접 지원)** 농작물 피해가 큰 농가에 대하여 지원

- 생계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 **(공공시설 복구비)**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 저수지, 양배수장, 배수로 등 피해복구 시설

○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및 신규자금 지원

-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기 대출 농업정책자금의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 피해율 30이상 50%미만 농가는 1년, 50% 이상 농가는 2년 지원

- 원활한 영농복구를 위해 피해농가에 용자 추가 지원(재해대책경영자금)

* 고정금리 1.8%, 또는 6개월 변동,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 1년, 과수·인삼 3년 연장가능)

□ **재해대책비의 주요항목 복구비 단가 및 부담률**

1) 대파(代播): 재해 등으로 대신 다른 씨앗을 뿌리는 일. 보통 종자대 및 비료대가 이에 해당

복구비 항목		지원단가(예시)	복구비 부담률(%)			
			보조		용자*	자부담
			국비	지방비		
농작물	농약대	일반작물 79만원/ha, 과수류 276만원/ha	70	30	-	-
	대파대	일반작물 352만원/ha, 사과 1,766만원/ha	35	15	30	20
가축 : 입식비		돼지(육성돈) 255,209원/마리, 양봉 151,030원/군, 산란계(중추) 2,305원/마리	35	15	30	20
농림시설 : 복구비		비닐하우스(내재해형10, 단동1) 12,137원/㎡, 인삼재배시설 A형 3,621원/㎡	24.5	10.5	55	10
생계지원비		2인가구 118만원, 4인가구 183만원	70	30	-	-
교생학자금면제		의무교육 미대상 학교 100만원(1학기)	70	30	-	-

* 용자 조건 : 금리 1.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사업 추진절차

○ 피해발생 신고(농업인)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자체) → 중앙합동조사(중앙.지자체, 필요시) → 복구계획 심의(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 복구비 예산 집행

☐ '25년 예산 : 1,600억원

* 연도별 집행액 : ('20) 133,634 → ('21) 145,604 → ('22) 65,039 → ('23) 170,023 → ('24) 266,32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5.6.18.제출)

더불어 2001년 도입된 농업재해보험은 농업인이 스스로 가입여부를 판단하는 “임의보험” 방식으로, 가입 농지별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평년(과거 5년 평균) 대비 감소한 수확량 또는 재해 발생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일부 보상하고 있음.

[농업재해대책 및 농업재해보험 제도 비교]

구분	농업재해대책	농업재해보험
목적	· 피해농장·시설의 “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 ⇒ 농작물 피해확산 방지, 생산 재개 및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지원	·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험금으로 보상 ⇒ 농가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자기 책임하에 사전적으로 위험 대비
보조율	· 대파대·가축입식비 50%, 농약대 100% 등 * 단가는 실거래가의 약 50~100% 수준 ('24: 62.4%)	· 보험료의 50%, 운영비의 100% (농작물) 또는 50%(가축) · 지자체에서 30~40% 지원 · 농가 보험료 부담은 농작물 12.6%, 가축 38.8%
지원 대상	· 재해 피해 농가(품목 제한 X) · 농업 외 근로소득 50% 이상은 복구비 지원 제외 ·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대파대·입식비 지원 제외(생계비, 농약대는 지원)	· 보험 가입 농가(대상 품목 및 축종: 농작물 76종, 가축 16종, '25) * 가입 지역, 품종 등 일부 제한
농가 보상 (농작물)	· (금액) 지원단가×피해면적 · (시기) 통상 피해 발생 후 1~2개월 내 · (절차) 피해 조사(지자체) → 복구비 확정(중앙) → 복구비 지급(중앙→지자체→농가)	① <u>농작물 수확감소보장</u> (43개 품목) · (금액) 피해액(수확량감소분×가격) - 자기부담금(보험가입금액×자기부담비율) · (시기) 품목별 수확기이후 · (절차) 피해조사(손해평가인력) → 보험금 산정 및 지급(보험사) ② <u>농작물 생산비보장</u> (33개 품목) · (금액) 피해면적 × 단위면적 당 생산비×경과비율 × 피해율 · (시기)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시마다 * 일부 품목 예외 · (절차) 피해조사(손해평가인력) → 보험금 산정 및 지급(보험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5.6.18.)

또한, 보험 보장기간 내 전 생육단계에 발생한 재해 피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고 있는데²⁾ 2025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작물의 품목은 총 76개이지만 전국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품목마다 가입할 수 있는

2) 예를 들어 벼 품목에 가입했다면, 보장기간 중 발생한 호우+태풍+우박 등 모든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수확감소량을 수확기에 1회 측정하여 보상

대상 지역에 차이가 있음.

이에 농어민이 실제로 입은 피해에 비해 지원의 규모가 적고 피해 회복 및 생계유지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피해금액의 80% 이상을 보조하거나 지원함으로서, 재해 이후 신속한 영농·영어 재개를 도모하고 농어가의 생존권 및 경영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특히 개정안은 보조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정 상황이나 행정 재량에 따른 지원 편차를 축소하여 재해보장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됨.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보조율이 법률로 고정되어 높은 수준으로 보장될 경우, 일부 농어가가 자구적 재해 예방 노력이나 보험 가입 등을 소홀히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농업재해보험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³⁾, 대상품목 확대⁴⁾, 보장수준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2025년 가입률이 57.2% 수준임.

3)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 ('20) 10,158억원 → ('21) 5,740 → ('22) 5,558 → ('23) 10,042

4) '01년 사과·배를 시작으로 꾸준히 목적물을 증가하여 '25년 현재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최근 10년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현황]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7.4	29.7	32.9	38.8	45.0	49.4	49.9	52.0	54.4	57.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피해금액의 80% 이상을 보조 및 지원하게 되는 경우, 많은 농어민이 현재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거나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음. 이는 위험 분산을 위한 민간보험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재해 예방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둘째, 피해액의 80퍼센트 이상을 일률적으로 보조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시행예정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을 통해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생산비 보장 및 실거래가 수준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을 강화할 예정으로, 소득 손실은 재해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⁵⁾

문 의 처
02)6788-5415

5)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